

# '17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I. 보조사업 개요

### □ 목적

-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 사업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 사업계획

- 사업비 : 48,240백만원(지방비 포함시 96,480백만원)
- 사업물량 : 60,000대

< '17년도 조기폐차 사업물량 및 국고보조금 예산 >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물량	예산	구분	사업물량	예산
합계	60,000	48,240	충북	500	402
서울	21,198	17043	충남	500	402
인천	10,250	8241	전북	750	603
경기	20,782	16709	전남	960	772
부산	1,000	804	경북	900	724
울산	300	241	경남	460	370
광주	300	241	강원	500	402
대전	300	241	제주	200	161
대구	1,000	804	세종	100	80

## II. 보조사업 수행

### □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장(이하 “지자체 장”이라 함)

※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 보조금 교부조건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사업 보조금 집행 시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 ※ 평택시는 국비 70%, 지방비 30%

### □ 사업집행 기준 준수

- 지자체장은 사업집행 시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업무처리지침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별도계정 설정·관리
  - 지자체 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

### □ 보조사업 집행계획 수립

- 지자체 장은 '17년도 조기폐차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추진
- 집행계획에는 관할 지역내 경유차 현황, 사업대상 차량, 그간 추진사항, 세부 추진계획, 재정지원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
- 수립된 계획서는 '16.12월 말까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Ⅲ.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

- 지자체 장은 '17년 조기폐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16.12.30일까지)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천안시 등 7개 시·군)	새만금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교부('17.1.10일까지)
- 지자체 장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17년 조기폐차 사업이 연내에 집행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지자체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변경**,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지자체 장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자체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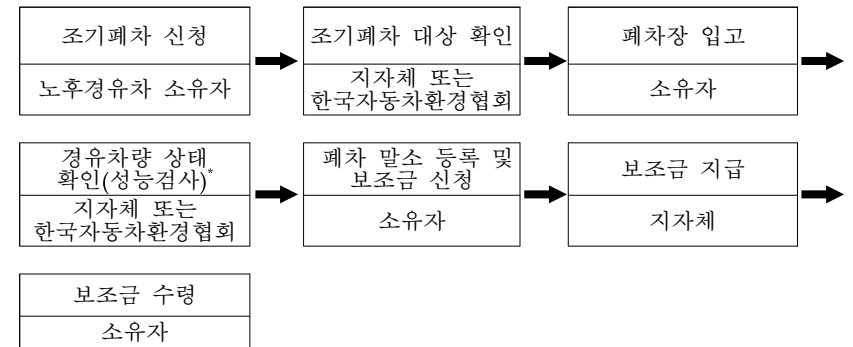
### Ⅳ. 조기폐차 대상차량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 조기폐차 대상차량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 \* '02년 이전에 제작된 Euro-1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등
-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구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현재 입법 예고 중)
  -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보조금 지급 절차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장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V. 보조사업 수행상황, 정산 및 완료보고

□ 수행상황 보고

- 지자체 장은 보조사업의 월간 수행상황을 **익월 5일**까지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료를 취합하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정산 및 완료보고

- 지자체 장은 보조사업 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정산 및 완료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준용)
-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조치
  -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b>'00년 국고보조금 세부 정산내역</b>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input type="checkbox"/> 보조사업자 : <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 :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사업자		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국고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시·도	조기폐차	소 계			
		RV, 소형승합			
		중 소형 화물			
		버스, 대형화물			
<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총사업비	교부금액	지방비	보조금 확정	반환금액	반환이자

[참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b>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b>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b>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b>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FAX		
대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인 결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			
<p>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b></p>					
<p>※ 참고사항</p> <p>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p> <p>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참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FAX		
신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p>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시장(지사) 귀하</b></p>					
<p>※ 첨부서류</p> <p>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p> <p>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p> <p>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참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별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 (수집·이용목적) 조치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시·도지사 귀중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FAX
신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점검 결과	원동기	<input type="checkbox"/> 가동됨 <input type="checkbox"/> 가동안됨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포함)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조향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제동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전기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그외 주요 부품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후·좌·우면)	
판정 결과	정상 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b>절차대행자 (인)</b>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